

# 대학안전관리계획

2026. 2.

# 목 차

<b>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b> .....	<b>1</b>
1. 목표 및 기본방향 .....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2
<b>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b> .....	<b>5</b>
1. 재난 .....	5
① 자연재난 .....	5
② 사회재난 .....	8
2. 안전사고 .....	10
① 대학 안전사고 .....	1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	13
③ 연구실사고 .....	15
3. 감염병 확산 .....	16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16
4. 범죄 .....	19
① 일반범죄 .....	19
② 성범죄 .....	21
5. 기타 .....	25
① 비상사태(전시 등) .....	25

#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27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30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35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	37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	38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	39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 추진과제

1

####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2. 목적 및 방침

목적

-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개선 절차마련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방침

- 재난사고, 안전사고 및 구성원 안전 중점관리
-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육 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1 학교 현황

#### □ 일반현황

학교명	부산디지털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전 화	051-320-2770	FAX	051-320-2788	홈페이지	www.bdu.ac.kr
총장	김정선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서이남 (직책 : 행정처장)	

####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재학생 : 2025. 4. 1. 기준)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2,859	82	-	2,941	

(교직원 : 2025. 4. 1. 기준)

교직원 (명)	교원	조교	행정직원	현업업무직원	합계
					20

####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② 조직체계 현황

### □ 담당부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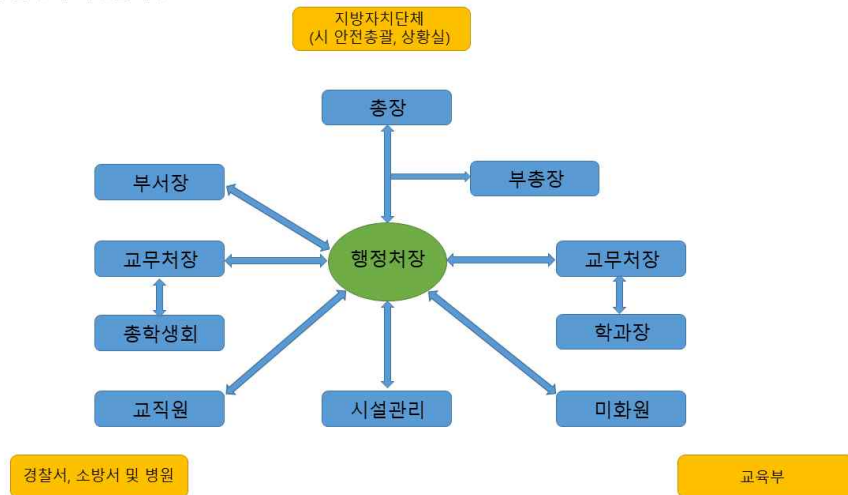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처	
1. 재난	자연재해(사회재난)	행정처	
2. 안전 사고	대학안전사고	행정처	교무처, 일반대학원
	교육시설안전사고	행정처	교무처, 일반대학원
	연구실사고	행정처	
3. 감염병	코로나 19	기획처	교무처, 일반대학원
4. 범죄	일반범죄	심리상담센터	행정처
	성범죄	심리상담센터	기획처
	학생안전사고	행정처	교무처, 일반대학원
5. 기타	비상사태	행정처	

###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총장실	총장	김정선	051-320-2001	010-9302-4505
부총장실	부총장	남현숙	051-320-1828	010-6243-4085
기획처	기획처장	김미정	051-320-1827	010-2578-7403
일반대학원	일반학원장	남현숙	051-320-1828	010-6243-4085
교무처	교무처장	홍영근	051-320-1970	010-5620-6160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010-3551-3978
온라인교육지원처	온라인교육지원처장	이진영	051-320-2972	010-2020-7534
심리상담센터	센터장	홍영근	051-320-2858	010-5620-6160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재난 발생시 비상연락망



○ 재난 심각단계 이전

<b>담당부서</b> 각 재난별 담당부서	<b>당직실</b> 휴일대응	<b>재난관리본부</b> 사태 악화 시 운영
---------------------------	--------------------	-----------------------------

○ 재난 심각단계

<b>담당부서</b> 각 재난별 담당부서	<b>합동상황실</b> 주야대응	<b>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b> 주야대응
<b>경찰서, 소방서 및 병원</b> 사상경찰서Tel.051-329-0330 (112종합상황팀) 북부소방서Tel.051-760-4463 좋은삼선병원Tel.051-310-9109 (응급의료센터)	<b>사상구청 안전총괄과</b>  051-310-4678	<b>시 상황실</b>  부산광역시 사회재난과 상황실 Tel.051-888-3042

## 1.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 피해현황(태풍)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호우, 대설, 지진은 피해현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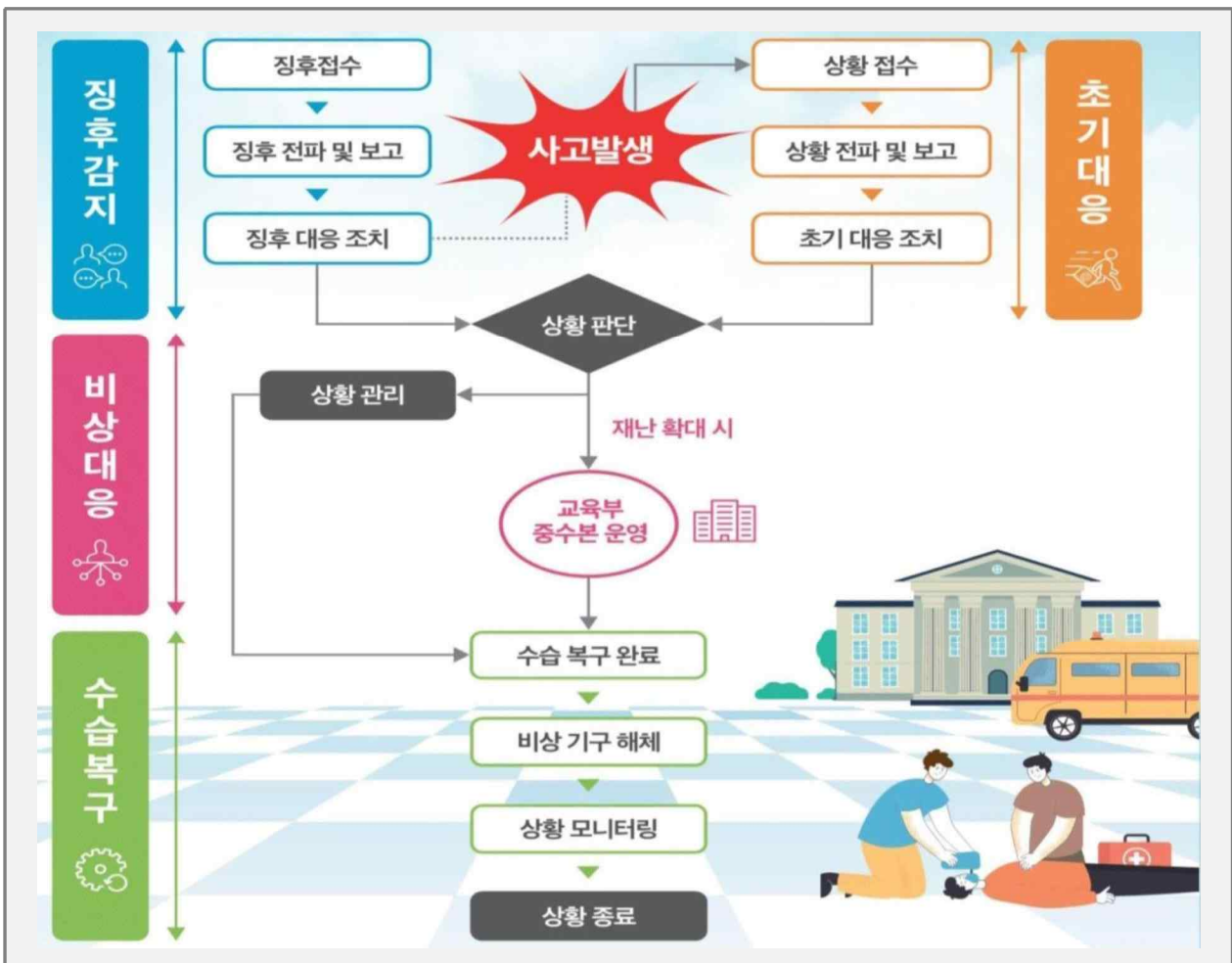
## □ 원인분석

- 부산디지털대학교 행정처 및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조사결과
  - 2020년 9월 3일(목)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강풍으로 부산디지털대학교 행정처 창문 파손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태풍, 호우, 대설, 지진)
  -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교육시설에 대한 계절별 시설안전점검을 통한 자연재난 방지
  -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 연계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참고 자료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4~제33조의3) 관련
-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복구 보험사업	2	2	2	6	
계	2	2	2	6	

## 2 사회재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 원인분석

- **조사 결과**
  -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화재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가 점차 증대되는 추세로 화기, 전열기구 사용·취급 시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강화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소방 시설 유지 관리 사업	2.7	2.7	2.7	8.1	
유해 건축재료 해소 사업	5	5	65	75	
기타 시설 관리 사업	8	8	8	24	
계	15.7	15.7	75.7	107.1	

## 2. 안전사고

### ① 대학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팀장	교무처	교무팀장	강현승	051-320-2776	협조부서
팀장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장	방혜정	051-320-2799	
담당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담당	이모은	051-320-2754	
담당	일반대학원	교학담당	정호준	051-320-2845	

####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 원인분석

- 조사 결과
  - 교육활동 생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향상,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연수 감소,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학생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교내활동)

-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 (교외활동)

-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참고 자료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보험가입 (대학안전사고공제가입)	-	1	1	2	
계	-	1	1	2	

## 2] 교육시설 안전사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팀장	교무처	교무팀장	강현승	051-320-2776	협조부서
팀장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장	방혜정	051-320-2799	
담당	장애 학생지원센터	장애 학생지원담당	이모은	051-320-2754	
담당	일반대학원	교학담당	정호준	051-320-2845	

##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 원인분석

### ○ 자체 점검에 대한 결과

- 「교육시설법」 및 관련 기준·지침의 제정에 따른 신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교육시설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최근 중대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점검·관리 관리강화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건축물 관리 예산	15	15	15	45	
보험가입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 사업)	2	2	2	6	
	17	17	17	51	

### 3 연구실사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연구 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 원인분석

- 조사 결과 : “위험유발 연구시설 없음”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참고 자료 ☞ 위기 경보 수준

종류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질병관리청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li> <li>·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li> <li>· 대응 역량 정비</li> <li>·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li> </ul>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li> <li>·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li> <li>·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li> <li>·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li> </ul>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li> <li>·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li> <li>·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li> <li>·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li> <li>· 방역 및 감시 강화 등</li> </ul>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정부적 총력 대응</li> <li>·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li> </ul>

- ❖ **(예방)**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 **(대비)**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 **(대응)**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 **(복구)**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	-	-	-	-	

## 4. 범죄

### 1 일반범죄

####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상담센터	상담센터장	홍영근	051-320-2858	주관부서
위원	심리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송수진	051-320-2974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협조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 원인분석

○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은 없으나 사회적으로 일반범죄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범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응)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 시 행정처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대학구성원 및 학생의 신변 안전 보호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전자보안설비 사업	6	6	6	18	

## 2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장	홍영근	051-320-2858	주관부서
위원	심리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송수진	051-320-2974	
처장	기획처	기획처장	김미정	051-320-1827	협조부서
팀장	기획처	기획팀장	김태완	051-320-2785	

##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	-	-	-	-	-
	성폭력	-	-	-	-	-	-
	계	-	-	-	-	-	-
피해자 수	성희롱	-	-	-	-	-	-
	성폭력	-	-	-	-	-	-
	계	-	-	-	-	-	-

## □ 원인분석

### ○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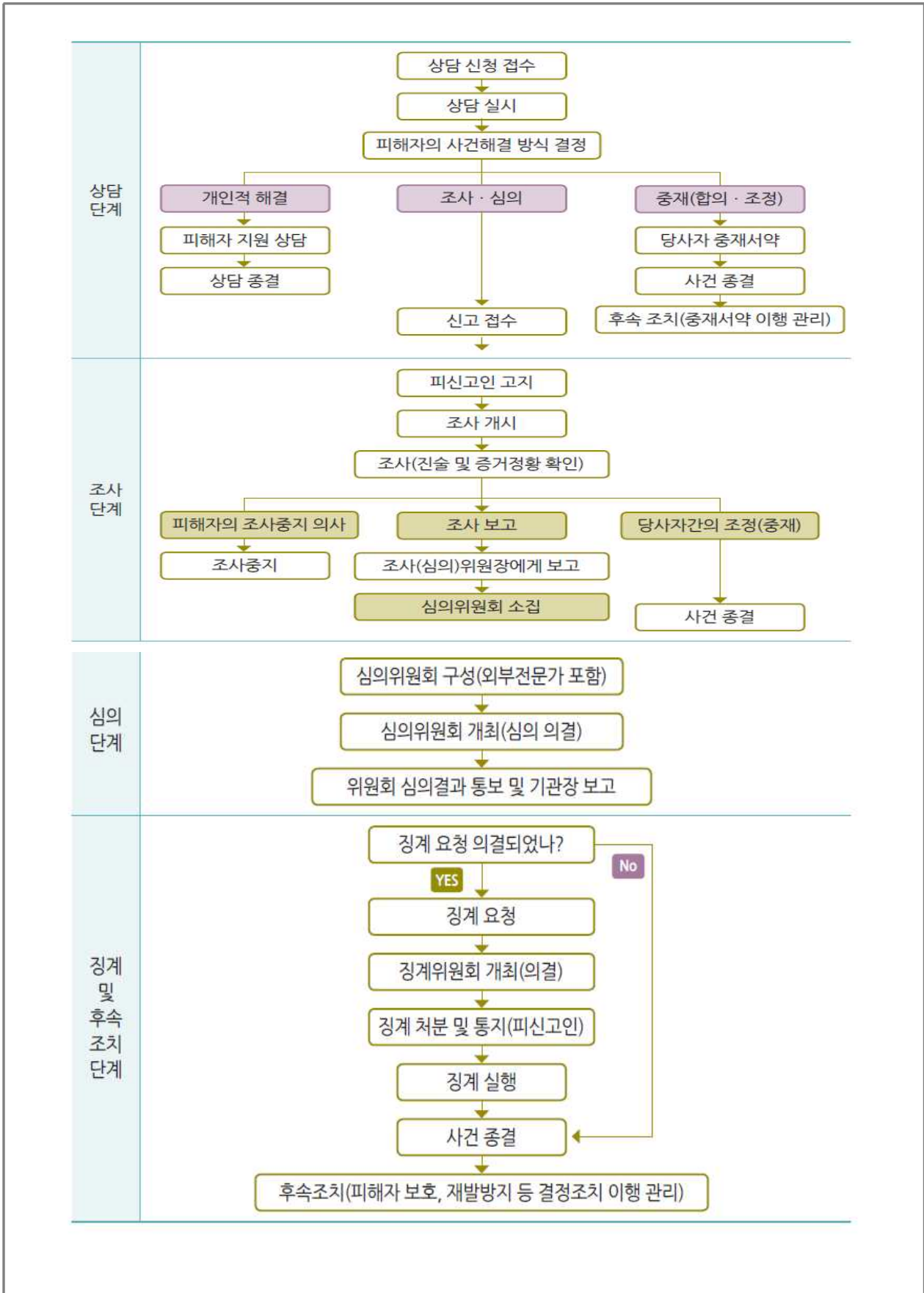
- 성폭력 발생 및 성희롱 행위는 없으나 지속적인 학교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신고 등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참고 자료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심리상담 실시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	0	0	0	0	

## 6. 기타

### 1 비상사태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통합방위법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4 등

#####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동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5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조사 결과

- 전시, 사면,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충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자료를 배포하여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
- 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	0	0	0	0	

###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대학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 민법 & 학교안전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6	공제 가입	2026-01-01 2026-12-31		2,859	1,195	-	-	-	-	

#### □ 보상한도

보장명	1인당보상한도액	1사고당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학생수	보장내용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인배상) 교직원배상책임, 시설물배상책임 포함	10,000,000원	10,000,000원	500,000원	2,859명	피공제자(대학 총장)의 제3자(학생 포함)에 대한 법률상손해 배상책임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물배상) 교직원배상책임, 시설물배상책임 포함	0원	10,000,000원	500,000원	2,859명	
교내치료비	1,000,000원	1,000,000원	-	2,859명	학생상해치료비
교외치료비	1,000,000원	1,000,000원	-	2,859명	학생상해치료비
신입생OT 치료비	1,000,000원	1,000,000원		1,000명	학생상해치료비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2,859명	
신입생OT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1,000명	
<b>공제료 합계</b>					<b>1,195,400원</b>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6	공제 가입	2026-01-01 2026-12-31	1,630	8,911	1,749	-	-	-	-	

#### □ 보상한도

담보	구분	품목수	가입면적	가입금액(보상한도)	
건물	일반건물	1동	8,912㎡	18,786,496,000원	
	고가건물	0동	0㎡	0원	
배상 책임	교육시설 안전사고	1동	8,912㎡	대인(인당) 3억원	
				대인(사고당) 3억원	
				대물(사고당) 10억원	
	화재	어린이놀이 시설사고		어린이 놀이기구	대인(인당) 1.5억원
					대물(사고당) 10억원
	승강기 사고	2대		대인(인당) 1억원	
피공제자 자동차 손해	교직원 자동차	대물(사고당) 2.5백만원			
부속물	0개		대인(인당) 8천만원		
물품	0개		대물(사고당) 1천만원		
특별담보	대학물품 위험확대	□ 도난·파손 □ 스프링쿨러누출 □ 급배수설비누출 □ 지진		대물(사고당) 1억원	
	전기위험	건물 / 부속물		0원	
합 계				(101,964,685원) (미가입시 500,000원)	
특별담보				물품 가입 금액과 동일	
합 계				미가입	

## 4.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 조직 현황

예시 서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장	홍영근	051-320-2858	주관부서
위원	심리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송수진	051-320-2974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협조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53	

### □ 지원 내용

구분	추진 내용
상담센터 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구성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li> </ul>

## 1. 재난 및 안전사고 교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lt;담당부서 및 담당자&gt;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6.15 ~ 7.31	1인당 4시간	73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재난안전 개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방법</li> <li>▪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방법</li> <li>▪ 소화기 종류에 따른 소화기 사용방법</li> <li>▪ 옥내소화전 사용방법</li> <li>▪ 완강기 사용방법</li> </ul>

##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방학중 (세부일정 추후계획)	1인당 4시간	73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재난안전 개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방법</li> <li>▪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방법</li> <li>▪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방법 교육</li> <li>▪ 소화기 종류에 따른 소화기 사용방법</li> <li>▪ 옥내소화전 사용방법</li> <li>▪ 완강기 사용방법</li> </ul>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1	3	73	-
행사 추진 방역 교육	1	3	73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예방교육</li> </ul>
응급장비 사용방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사용방법 교육</li> </ul>

### 3. 성범죄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법 등

#####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장	홍영근	051-320-2858	주관부서
위원	심리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송수진	051-320-2974	
처장	기획처	기획처장	김미정	051-320-1827	협조부서
팀장	기획처	기획팀장	김태완	051-320-2785	

####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5.01.01.~12.31.	1	1,131	-
교직원	2025.06.01.~12.31.	4	145	50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실시 : 온라인 교육</li> <li>▪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li> </ul>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2025.01.01.~12.31.	1	1,300	-
교직원	2025.06.01.~12.31.	4	78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실시 : 온라인 교육</li> <li>▪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li> </ul>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로 운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안전사고, 범죄, 산업재해(중대재해) 등**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부산북부소방서	051-760-4480	-	종합상황실
한국전기안전공사	051-960-5266	-	시설안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051-640-0860	-	안전지원부
부산사상경찰서	051-329-0330	-	112종합상황팀
한국전력공사	061-345-4341	-	재난관리
좋은삼선병원	051-310-9109	-	응급의료센터
부산사상구청	051-310-4633	-	안전총괄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51-711-7147	-	
교육부	044-203-6355	-	학교안전총괄과
사회재난과 상황실	051-888-3042	-	부산광역시청
법무부 스마일센터(부산)	051-582-1295	-	
부산검찰	1301	-	
부산경찰청	182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86-1295	-	
해바라기센터(부산동부)	051-501-9117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1-320-2770 051-320-2769	kht0001@bdu.ac.kr	행정처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	
부산북부소방서	051-760-4480	-	종합상황실
좋은삼선병원	051-310-9109	-	응급의료센터
부산 사상구보건소	051-310-4823	-	감염병관리계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감염병 전 분야)	051-320-2785	-	기획처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53사단 육군	051-730-6151	-	검찰부
부산사상경찰서	051-329-0330	-	112종합상황팀
주례지구대	051-329-0165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1-320-2770 051-320-2769	-	행정처

# 붙임1

##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② 사회재난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팀장	교무처	교무팀장	강현승	051-320-2776	협조부서
		팀장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장	방혜정	051-320-2799	
		담당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담당	이모은	051-320-2754	
		담당	일반대학원	교학담당	정호준	051-320-2845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팀장	교무처	교무팀장	강현승	051-320-2776	협조부서
		팀장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장	방혜정	051-320-2799	
		담당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담당	이모은	051-320-2754	
	담당	일반대학원	교학담당	정호준	051-320-2845		
	③ 연구실 사고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처장	기획처	기획처장	김미정	051-320-1827	주관부서
		팀장	기획처	기획팀장	김태완	051-320-2785	
		팀장	교무처	교무팀장	강현승	051-320-2776	협조부서
		팀장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장	방혜정	051-320-2799	
		담당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담당	이모은	051-320-2754	
		담당	일반대학원	교학담당	정호준	051-320-2845	
4. 범죄	① 일반 범죄	센터장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장	홍영근	051-320-2858	주관부서
		위원	심리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송수진	051-320-2974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협조부서
		담당	행정처	총무시설담당	정호준	051-320-2769	
	② 성범죄	센터장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장	홍영근	051-320-2858	주관부서
		위원	심리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송수진	051-320-2974	
		처장	기획처	기획처장	김미정	051-320-1827	협조부서
		팀장	기획처	기획팀장	김태완	051-320-2785	
5. 기타	① 비상사태	처장	행정처	행정처장	서이남	051-320-2770	주관부서
		담당	행정처	총무시설담당	정호준	051-320-2769	
		담당	행정처	시설담당	이승호	051-320-2769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	-	-	-	-	-	
		인명피해(사망)	-	-	-	-	-	-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② 성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5.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복구사업	2	2	2	6	
		계	2	2	2	6	
	② 사회재난	소방 시설 유지 관리 사업	2.7	2.7	2.7	8.1	
		유해 건축재료 해소 사업	5	5	65	75	
		기타 시설 관리 사업	8	8	8	24	
	계	15.7	15.7	75.7	107.1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	-	1	1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	2	2	2	6	
		계	2	2	2	6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건축물 관리 예산	15	15	15	45	
		계	15	15	15	45	
	③ 연구실사고	-	-	-	-	-	
계		-	-	-	-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	-	-	-		
		계	-	-	-	-	
4. 범죄	① 일반범죄	전자보안설비 사업	6	6	6	18	
		계	6	6	6	18	
	② 성범죄	-	-	-	-	-	
		계	-	-	-	-	
5. 기타	① 비상사태	-	-	-	-		
		계	-	-	-	-	